

#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권리

## 다양한 상상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노 명 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최 혜 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권리

다양한 상상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부천문화재단 이슈페이퍼

노명우 · 최혜자

부천문화재단  
**ISSUE** PAPER  
이 슈 페 이 퍼

발행처 부천문화재단  
발행인 김용수  
편집인 손경년  
연구기획 이윤이 문화정책팀장  
신정호 문화정책팀  
정지연 문화정책팀  
발행일 2013. 12.

---

이 보고서는 최근 문화예술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내용으로 부천문화재단의 공식의견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부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 다양성 없는 다문화
- 문화적 권리와 결합하지 못한 문화 다양성
-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문화다양성을 위하여
-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 저자 소개

노 명 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 혜 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 1. 매우 특이한 현상 : 문화 다양성 없는 다문화<sup>1)</sup>

문화는 정의 내리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문화는 제도화되어 물질의 형태로 외화되기도 하지만 인간의 신념과 태도와 믿음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으로 관념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우리가 문화를 제도적 영역과 비 제도적 영역으로 구분한다면, 제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비제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결이 쉽다. 제도적 영역에서 문화는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문화와는 달리 추상도가 낮은 영역이며 때로는 가치 중립적인 물질 토대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반면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문화는 문화가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구실과 달리 때로는 오히려 첨예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비제도적 영역의 문화에서는 각자의 사람들이 혹은 집단들이 최선이나 최상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 체계가 때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충돌은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충돌보다 훨씬 강력하고 끈질기고 여운이 오래가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을 지닌 집단이 각 집단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신념을 일종의 양자택일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한, 문화와 문화의 접촉이 강화될수록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의 가능성보다는 비제도적 영역에서의 문화 갈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력의 국제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상이한 문화 사이의 충돌이 현대사회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문화간 접촉이 오히려 문화간 갈등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여러 문화에 대한 양자택일적인 선택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공존할 방법에 대한 모색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간의 다양성 공존이 단순한 수사학적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제로 문화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꽤 오랫동안 문화 간의 갈등의 문제를 동화주의라는 틀에서 해결하려고 시도됐다. 특히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저발전 국가로부터 선진 산업국가로의 인구 유입으로 등장하고, 주요 국가가 다인종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체성의 분절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화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동화주의의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문화

---

1) 본 원고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노명우(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대표)가 작성한 원고로 본문 1,2,3은 노명우, 본문 4는 최혜자의 원고로 구성됨

동화주의는 근대화 이론에 기대어 소수민족, 이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집단이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에 동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며, 각 문화를 존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문화 간의 우월관계 부정이 아니라, 강한 문화가 약한 문화를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문화동화주의는 언어 및 생활습관의 차이에 따른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여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산출하기도 하였다.

인구의 국제 이동으로 인한 다인종 상황을 지칭하는 인구학적인 변수(demographical variable) 상황으로서의 다문화적 상황(multicultural)<sup>2)</sup>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추세이기에 다문화적 상황이라는 인구학적 변수에 대응하는 이념적인 변수(ideological variable)에 대한 모색은 매우 중요해진다. 문화동화주의가 시대에 걸맞은 이념적 변수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해졌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념적인 변수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특히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돌연 다문화정책이 중요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문화’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매우 강하게 부각되었는데, 한국에서 강하게 부각된 ‘다문화’는 기호의 의미와는 달리 문화동화주의에 가까운 이념적 변수로 작용해 왔다. 본래 이념적 변수로서의 다문화주의는 이민자/소수자의 주류문화로의 동화정책을 추구하는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에 입각한 동화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동화주의에 대한 대안이기에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1) 한 민족국가(nation-state)안에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의미하거나 (2)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목소리를 정책이 반영해야 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가 행정, 법, 교육, 이민, 고용 등의 모든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의 ‘다문화’는 문화동화주의의 변형된 포장지에 불과한 성격이 강했지만, 원리상으로도 다문화주의에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기도 하다. 이념적 변수로서의 다문화주의가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2) ‘다문화적 상황’은 한 민족국가 내부의 인종적 다양성(ethnic diversity)을 인구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사용함

## 2. 문화적 권리와 결합하지 못한 문화 다양성

다양할수록 좋다는 실용적인 맥락에서 이해된 문화다양성,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문화다양성과 결합한 다문화주의는 왜 다양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략한 채 다양할수록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문화다양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막연한 기대는 다양함을 권리나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온정과 결합할 때 정책으로서 발휘할 힘을 상실한다. 문화다양성 논의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로 귀결되고, 이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방한 선택지적 온정주의적 정책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은 더욱 강력하게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언급될 때 바람직한 이념적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라는 개념은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개념은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 제정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한 오래된 개념이다. 문화적 권리 개념과 관련하여 1948년의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그동안 부가적인 것, 잉여의 것으로 취급받아왔던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 인권 중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인권 개념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에서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면서 문화적 권리가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인간의 기본인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문화적 권리 개념은 이후 1966년 12월 16일 유엔에서 채택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세계인권선언’과 달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15조에서 문화적 권리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규약은 인류가 정치적 권리 보호에 집중하는 인권운동의 1단계에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2단계 개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인권의 목표가 문화적 권리의 보장임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후 문화적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69년의 ‘미주 인권선언’, 1976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1981년에 채택된 ‘인간과 인민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 Rights)’에서도 나타난다. 유네스코(UNESCO)는 문화적 권리 개념의 확산과 구체화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였다. 1966년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14차 총회에서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 1968년에 개최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이 성명은 노동권, 여가권, 사회보장권에 이어 문화적 권리가 인류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또한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에서 문화적 권리는 인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개념임을 지적하면서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제기된 문화적 권리의 기본 정신을 수용하고 있다.

반면 국제적 흐름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 정책 용어로서는 채택되기는 하였지만,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 문화적 권리의 차원과 결합하지 못한 채 때로는 온정주의적 정책의 이념을 제공하는 용어로 때로는 문화동화주의를 포장하는 알리바이로 사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분야이다.

### 문화적 권리와 결합하지 못한 문화 다양성의 사례: 한국의 문화분야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라는 이슈에 관한 한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독립국 중에서 가장 독특한 사례이다. 한국은 1988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차관 공여대상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Recipient)으로부터 공여국(Contributor)으로 이행했다. 이러한 이행의 사례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발견되기에 한국이라는 사례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서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공적개발원조 수원국가에서 공여국으로의 이행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은 공적개발원조가 무의미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도 있겠으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이행한 이후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여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예외적인 성공적 이행과 비교해볼 때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만은 없다. 짧은 시간 내에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라는 한국의 경험은, 동시에 한국

은 다른 공여국에서 비해 공여국으로서의 공적개발원조 경험이 매우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는 여타 개발원조위원회 국가와 여러 가지 비교된다.

2010년 10월 25일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2011년 12월 <ODA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마침내 2012년 9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이 발표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체계성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른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공적개발원조의 체계 정비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공적개발원조의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철학을 한국의 예외적인 성공적 경험으로부터만 도출해낼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개발 성과에 대한 과대평가는 공적개발원조의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기본 이념적 기초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적개발원조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지닌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 의하면 159개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적개발원조의 자원 규모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정책 비전 달성 측면에서 우선적인 기본 프로그램 40개를 선정하였으나 159개의 영역별 프로그램 풀과 40개의 기본 프로그램은 인프라(교통),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농림/수산업,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편중은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의 토대인 한국적 발전(development)이라는 예외적 사례를 평가하는 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체계화한다는 선의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에 사용된 방법론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콘텐츠들을 먼저 찾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ODA의 실체를 파악하고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귀납적 연구방법<sup>3)</sup>”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이른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두 가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절대화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공여국 중심주의로 인한 위험이다. 한국이 예외적인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적 맥락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동일하지 않다. 한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냉전체제와 개도국에 대한 자유 무역 정책이 허용되었던 예외적 시기 동안 우수한 노동력에 기반을 둔

---

3) <한국형 ODA 모델 수립>. 2012. 24.

수출중심의 성장주의에 의해 공적개발원조를 성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원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이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 속의 성공이기에, 한국적 발전 경험은 WTO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수원국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한국이 지닌 내부적인 예외적인 조건 또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이행에 결정적인 요소였다. 한국적 개발 모델은 높은 교육열 종교 간 갈등의 부재,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지닌 지극히 예외적인 내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원국은 한국과 같은 높은 교육열, 종교갈등의 부재, 단일 언어와 단일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두 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부터 한국형 모델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한국의 발전을 경제적 발전으로 환원시켜 발전이라는 목표 자체를 경제성장과 동일시하는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 과거의 성공적 경험으로부터 추진방안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개발은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또한 부적절하기도 하다. 미래의 이슈에 대한 상대적 둔감함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회고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이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발전에 대한 경제주의적 이해와 결합하면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형태에 집중되어 있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의 발굴이라는 미래 지향과 결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3.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문화다양성을 위하여

한국이 공적개발원조에서 대외적으로 한국적 경험의 특수성에 도취해 한국형 모델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국형 모델 보급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화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다양성이라는 문제가 공적개발원조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틀로써만 작용할 경우 문화다양성이라는 이슈가 지나고 있는 다층적 차원을 은폐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흔히 문화다양성은 문화와 문화 단위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환원되지만, 문화다양성은 국민국가 간 혹은 인종 집단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문화 다양성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차원을 언급하는 수많은 개념들, 즉 다문화주의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 문화상호주의(interculturalism) 문화상호성(interculturality) 문화융합(cultural fusion) 등의 문제는 우리들의 습벽을 따를 경우 국민국가 간 혹은 인종 집단 간의 문제 틀로 환원된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이 이렇게 국민국가 간 혹은 인종집단 간의 문제 틀로 환원되는 순간 문화다양성 논의는 온정주의적 태도와 결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문화다양성을 국민국가 간의 문제로 환원시켜 생각하고, 이로부터 정책과 프로그램이 도출되고 있는 경향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은 문화간 상호 이해의 증대라는 듣기 좋은 말잔치에 그칠 수도 있다. 물론 문화다양성의 문제는 국민국가 간 혹은 인종집단 간 문제의 측면을 분명히 지니지만, 이에 못지않게 특정 사회의 ‘내부’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바로 이러한 맥락을 놓치고 있으며,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문화동화주의적 접근 역시 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을 특정 사회의 내부의 문제로 파악하는 접근방식은 “각 개인을 다양한 정체성과 이중 문화적 특징들을 구성하는 잠재적인 분모로 간주하며, 그러한 특징들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정체성을 구축<sup>4)</sup>”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된 문화다양성의 목표는 “기본적인 인권, 문화민주주의의 증진, 모든 소수자들(민족, 젠더, 언어, 인종, 성 정체성에 따른)의 동등한 참여에 초점<sup>5)</sup>”을 맞춘다. 우

4) 니나 오블젠.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8. 112.

리가 문화다양성을 국가 간 측면과 아울러 특정 사회 내의 관계의 문제에 주목하는 한, 문화다양성 논의는 문화적 권리<sup>6)</sup>에 관한 논의와 불가피하게 결합할 수밖에 없다. 문화다양성 논의가 문화적 권리에 관한 논의와 결합할 때, 문화다양성은 한 국민국가의 지배적인 문화(한국문화)와 인종집단의 지배적인 문화(한국인의 문화)와 다른 국민국가의 지배적인 문화의 관계로 환원되지 않을 가능성을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집단의 관계의 틀이 아니라 한 사회 속의 개인의 문화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문화다양성은 중산층의 온화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용 제고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서 구체적인 문화정책의 과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한 지역, 사회에 사는 지배적인 인종집단과 소수 인종집단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인종집단이 소수 인종집단의 문화를 수용하고 보호하는 온정 정책이 아니라 한 지역과 사회에 사는 모든 개인의 문화적 권리가 국적과 인종을 떠나서 보호되는 정책이어야 한다.<sup>7)</sup> 그렇기에 문화다양성 정책은 한 사회에 사는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축소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화다양성은 이런 맥락에서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또 다른 목적과 결합하게 된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그 논의가 문화적 권리와 결합하지 않을 때 온정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온정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문화다양성은 빛 좋은 개살구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제 문화다양성이 빛 좋은 개살구 신세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 
- 5) 니나 오블젠.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8. 112.
  - 6) 사문화 되었지만 한국의 문화현장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기타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음이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정보와 전달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7) 문화현장 참조. “7. (지역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문화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체성과 활력의 원천이다. 지역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자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자원들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4.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상상(8)

2005년 우리 사회에 다문화정책이 수립된 이래,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관한 다양한 실수와 의미 있는 실험을 해왔다. 정책 초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전제하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새터민, 성 소수자를 정책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 예컨대, 우리 사회 전반이 다양한 문화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 등의 이유로 정책의 범위는 점점 좁아져 마침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에 국한하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자연스럽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돕거나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려를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책적 설계 속에서 문화적 역할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화정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 문화다양성 사업인 무지개사업은 문화정책의 자기 역할을 고민하게 해주었다. 다문화정책이 보편적으로 인종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화가 기대되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설계된 한국식의 다문화정책에서는 제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고민은 정책의 협소한 적용이라는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문화다양성을 확산해야 한다는 오늘날의 문화적 과제가 이미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 응답하라 문화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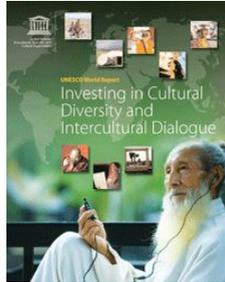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통해 모든 인간과 집단은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의 생산자일 뿐 만 아니라, 모든 문화에는 우열이 없음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이 비록 국제통상과 관련된 문제의식으로부터 제기된 것이기는 하더라도, 1970년대 세계인권선언의 문화 버전이며, 문화다양성이 인간과 집단이 가진 권리임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 마침내 문화는 통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화 다양성 협약이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9년 이 국제 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다음 순서는 각국의 실천 활동이다.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슈는 국제적인 선언과 회원국의 비준에 의해

---

8) 위 원고는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대표)의 원고로, 2013년 문화다양성 사업 무지개 다리 경기 컨소시엄 최종 결과보고서에 기고된 내용임

국제 협약이 되었으므로, 유네스코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에서 문화다양성을 진작할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에 관한 유네스코 최근 보고서]



기본적으로 다문화주의 혹은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수준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서구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감과 확산은 1960년대 유럽과 북미를 휩쓴 인권, 반전 운동의 성장 위에 활성화된 사회의식이다. 인종,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의 권리가 주장되어 정책과 제도로 정착되기까지 그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을 깨나가는 활동과 노력이 있었다. 즉,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확산된 가치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러한 맥락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화 다양성이라는 사회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2013년 문화다양성 사업으로서의 무지개다리 사업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하나는 소위 ‘우리’ 안의 다양성도 수용될 정도의 맥락에 닿아 있지 않으면서 타자에 대한 다양성은 수용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사회적 기득권이 엄존하는 사회 제도 속에서 문화적 접근은 무엇이며, 문화재단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두 가지 질문이 어렵기도 하지만, 해결 방안이 쉽게 나오지도 않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타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문화 다양성?**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안의 다양성의 문제가 생략된 채, 타자의 다양성이 이야기 되고 프로그램화되는 것에 관한 질문이다. 2013년 무지개 사업의 사업 결과보고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의 발표회나 전시장이 썰렁하기도 하지만 참여자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정주민들

초대하고 이들이 참여할만한 요소를 배치하지 않는 한 정주민들은 공연이나 전시회에 오지 않는다. 그만큼 매력이 없거나 일상의 삶과 유리된 채 만들어진 이주민들의 다소 특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과연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는 관점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지점이다. 문화 다양성은 타자의 다양성을 프로그램화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점은 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자’라고 규정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의 다양성을 끌어내고 이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와 타자 간의 경계, 두려움과 낯섦 혹은 차별을 유발하는 경계를 소통의 지점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경계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타자를 규정하는 의식 혹은 고정관념의 근원 역시 경계이다. ‘우리’와 ‘타자’ 사이의 지점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그래서 서구사회에서는 이를 문화 간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라고 명명되는 우리는 동일한 우리인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심한 충돌을 하는 우리이며, 기성세대에 좌절하는 청년이 갈등하는 우리일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는 이질적인 의식을 가진 우리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 어느 동성애 부부의 결혼식에는 결혼하는 부부와 이들에게 오물을 뿌린 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구성원이자 않은가 말이다. 우리라고 명명된 우리 간에는 실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해 숙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문화 다양성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와 함께 만들어갈 부분이다.

아울러, 개인이 가진 다양성에 대한 발견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전을 겪고 있는 사회이다. 소위 서구사회가 겪은 300년의 산업화를 단 30년 만에 겪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의식변화 속에 허덕이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50대 이상의 장년층은 아픈 부모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는 효성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배웠고, 효의 상징으로 삼았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행위는 효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적 행위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은 자기 안의 다양성 심지어 합치하기 어려운 다양성으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웰빙을 넘어 힐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피로를 겪고 있다. 육체적 일중독도 문제지만, 정신적 과로는 더욱 문제가 되어 자신의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증세마저 보이기 일쑤이다. 바로 문화 다양성은 이러한 개인 안의 다양성을 끌어내고 수용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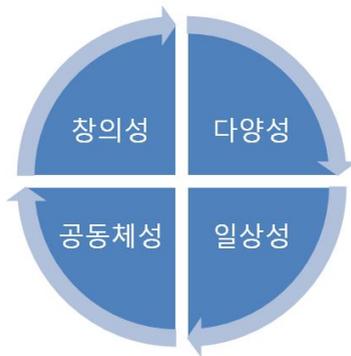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은 국제간 문화적 특수성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타자와의 관계, 사회 내

문제 심지어 개별의 자유로운 자기 긍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다. 이쯤 되면 문화 다양성은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다단한 문제이며, 사회적 이슈를 끌어안은 오지랖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의 원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관념과 매우 다른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문화’라는 코드 속에서 해석된다면 그것은 다르게 접근되는 것이다.

### 문화다양성에 접근하는 문화적 태도와 준비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할 차례이다. 사회적 기득권이 존재하는 사회 제도 속에서 문화적 접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실천 이후에나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며, 문화재단이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답이 될 것이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험을 통해 각 사회에 맞는 다양한 상(象)을 만들어 가고 있어 각각의 모델도 그 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문화는 사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서구의 문화적 실험은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더구나 주제 자체가 문화다양성이지 않은가. 그러나 다양한 실험에 앞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다.

문화는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대체로 삶의 자원이고, 내용이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누구나 어느 시대나 사람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사람이 사는 그 일상이고, 그러한 삶의 유산으로 총체성을 띤다. 따라서 문화는 몇 가지 요소를 내장하고 있다. 문화는 각각의 요소가 별도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그 사회의 생동감 있는 맥락 속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



## 문화가 가진 보편적인 속성

문화다양성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다양성만을 고취하는 것 혹은 차별받는 요소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사회의 맥락으로부터 이탈된 것이며, 문화의 맥락에서는 편협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문화 다양성을 별도로 떼어서 조리한다면 그것은 아주 단순한 그리하여 마침내 다양성이라는 과제와 멀어지고 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더구나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살면서 오로지 이주와 관련된 다양성만을 집어서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한다면,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은 개인의 다양성이 일상적으로 존중받는 경험을 확산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문화다양성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며, 국제 사회의 많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문화적 각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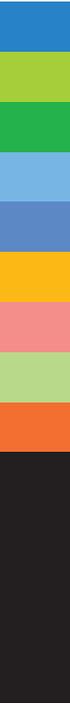
현재 무지개다리 사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차별 중에 강력한 권력관계가 개입된 인종적 차별 특히, 비서구권에 대한 차별은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성이나 공동체성 혹은 창의성과 결합한 시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아름다운 선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있다. 문화 프로그램의 참여가 과연 이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수많은 정책 대상에도 불구하고 소수 이주민에게 과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의문 말이다. 다만 이주민 대상뿐 아니라 정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을 넘어 문화의 총체성에서 구현되는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문화재단은 사실 지역의 문화 정책을 개발하고 민간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재 대부분 문화재단이 지역의 공공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혹은 문화방계 분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행정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이슈 생산기능과 정책 설계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필요한 문제이다.

문화다양성의 추상적 문제를 사업화하고 프로그램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2013년의 실험은 몇 년간의 실험을 보태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할 토대가 될 것이다. 서구 사회도 이러한 이슈를 사회 내 안착시키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 문화다양성을 사업화 하는데 어떠한 지점을 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문

제를 염두에 두고 모든 다양한 실험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맞는 문화 다양성의 상(象)은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의 무모성이 관대하게 평가되고, 시도의 과감성이 격려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2013년 문화다양성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권 7개 문화재단 역시 사업의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재단에 걸맞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문화다양성 사업을 지역 문화정책에 적절하게 위치지어 지역의 사회·문화 조직과 체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재단 내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들을 안정화하여 사업의 원활성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과 사업의 초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상상하기'이다. 사실 다양성을 상상하게 된 시대에 사는 것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졌다는 증거이다. 상상하자.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420-812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Tel 032,320,6361 Fax 032,320,6429  
[www.bcf.or.kr](http://www.bcf.or.kr)